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58호(2007. 4. 28. 시행)
전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17호(2013. 7.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01호(2015.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45호(2016. 1.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5호(2017.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3호·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기준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 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산소치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요양비기준고시 제3조제1항에 따른다.

②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제4조(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이하 "당뇨병 소모성 재료"라 한다)"는 요양비기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는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제5조(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4에 따른다.

제5조의2(인공호흡기 치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②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다.

③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④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른다.

제6조(처방전) ①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

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

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3서식의 처방전
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 가.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나. 제2형 당뇨병: 모든 의사
  - 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
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
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

② 제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제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처방전: 1개월.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
3. 제1항제3호·제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4. 제1항제5호·제6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최초 처방: 6개월 이내
  - 나. 재(再)처방: 2년 이내

제7조(요양비의 지급기준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양비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요양비의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2007.4.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에 따라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로 등록한 자가 시행일 현재 유통 중인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제공하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요양비

	<p>나.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li> <li>2)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li> <li>3)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li> <li>4)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li> <li>5)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li> </ol> <p>다. 제1호가목2)·3)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병에 대한 최초 진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최초 급여 적용일 이후 2년이 지난후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재확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최초 급여 적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p>
<p>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p>	<p>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4의2의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li> <li>2.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가목의 임상 증상확인 및 나목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상태와 함께 인공호흡기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은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며,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li> </ol> <p>가. 다음의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 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숨참</li> <li>2) 피로감</li> <li>3) 두통</li> <li>4) 정신이 밝지 못하고 멍함</li> <li>5)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li> <li>6)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li> <li>7) 빈맥(頻脈)</li> </ol> <p>나. 2회 이상 실시한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p>

	<p>하나에 해당하고, 그 검사결과지 또는 해당 검사결과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을 것</p> <p>1)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PaCO<sub>2</sub>)이 45mmHg 이상</p> <p>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sub>2</sub>)이 40mmHg 이상</p>
<p>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p>	<p>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p> <p>1. 다음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p>가. 요양비 기준고시 별표 4의2제1호 및 제2호(뇌간뇌졸중 증후군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은 제외한다)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분비물 배출이 어려워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을 것</p> <p>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呼氣)유량 측정 결과 최대 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일 것. 다만, 최고호기유량 측정을 할 수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1)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p> <p>2) 만 6세 이하의 소아</p> <p>3)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를 한 경우</p> <p>2.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을 최초로 받을 때 기침유발기에 대한 기본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p>

[별표 2]

요양비 의료급여 지급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요양비 기준금액

항 목	지급기준액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규칙 제24조 제1항제1호 관련)	가.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 제1항제2호 관련)	가.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내 실구입가로 한다.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기준가격은 1일 10,420원으로 한다.																					
산소치료 (규칙 제24조 제1항제3호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구분</td> <td style="width: 33%;">가정용</td> <td style="width: 33%;">휴대용</td> </tr> <tr> <td>기준금액</td> <td>12만원/월</td> <td>20만원/월</td> </tr> </table> <p>비고: 휴대용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서비스를 1개월에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받은 경우에 기준금액은 10만원/월로 한다.</p>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구분	가정용	휴대용																				
기준금액	12만원/월	20만원/월																				
당뇨병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 제1항제4호 관련)	<p>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지원대상자</th> <th colspan="2">기준금액</th> </tr> <tr> <th>인슐린 투여자</th> <th>인슐린 미투여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제1형 당뇨병환자</td> <td>2,500원/일</td> <td>해당사항 없음</td> </tr> <tr> <td rowspan="2">제2형 당뇨병환자</td> <td>만 19세 미만</td> <td>2,500원/일</td> <td>1,300원/일</td> </tr> <tr> <td>만 19세 이상</td> <td>900원/일</td> <td>해당사항 없음</td> </tr> <tr> <td colspan="2">임신 중 당뇨병환자</td> <td>2,500원/일</td> <td>1,300원/일</td> </tr> </tbody> </table> <p>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p>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 제1항제5호 관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1일 9,000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으로 한다.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규칙 제24조제1 항 제6호 관련)	가.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기준금액(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원)		
	인공호흡기 대여료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불류형		356,000원/월	
	기본소모품	세트 1		60,000원/월	
		세트 2		80,000원/월	
	선택 소모품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7,000원/개
			실리콘 연결형		14,500원/개
		마스크	코마스크 (Nasal, pillow)	실리콘 또는 필로우	125,000원/개
				겔	120,000원/개
코·입마스크 (Facial)			실리콘	72,000원/개	
			겔	148,000원/개	
비고: 기본소모품 중 세트 1은 튜브 1개, 필터 4개 및 가슴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하며, 세트 2는 튜브 2개, 필터 4개 및 가슴기물통 1개의 세트를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					
나. 기침유발기 대여서비스의 기준금액은 16만원/월으로 한다.					

2. 요양비 구입비용의 기금부담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등 구입 및 대여에 대한 기금의 부담은 유형별 기준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전부로 한다. 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전부

나.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일당 금액으로, 산소치료와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월당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를 월 중에 시작하거나 월중에 종료한 경우 그 시작 월 또는 종료 월의 요양비(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기계대여료에 한정한다)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나. 산소치료 서비스 및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에 대하여 요양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소모품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는 1일에 6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 라.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와 마스크 중 하나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선택소모품과 다른 종류의 소모품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중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구분		기준금액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	일반 일체형	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	29,000원/월
마스크		400,000원/연

- 바. 기침유발기 대여 서비스 중 소모품(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와 튜브, 필터 및 커넥터를 하나의 세트로 한다)에 대한 요양비는 1개월에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한다.